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규모학교 설립기준 완화〉

■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75호)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진선미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23.
3. 회부연월일 : 2024. 8.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개발에 따른 인구의 유입으로 학생 수가 급증하여 과대·과밀학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 학생 수 감소로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어 지역간 학교 수급 여건에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 설립 기준을 일정 부분 완화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소규모 학교가 보다 용이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지역·학교 간 학습 환경의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설립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후단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소규모 학교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완화된 설립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후단 신설>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 ----- ----- ----. <u>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학교에 대하여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완화된 설립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인하여 학생급증에 따른 과대·과밀학급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인구 유출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도시지역의 학교는 과대·과밀학급의 운영으로 인한 수요자인 학생 중심의 교육이나 학생들이 학교활동에 참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학교가 통폐

합되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학교를 확충 또는 유지할 수 있도록 설립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설립기준 규정현황을 살펴보면, 대통령령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 교사(校舍), 복합시설, 교사(校舍)용 대지, 체육장, 교지, 교구, 급수·온수 공급시설, 각종 학교 등의 시설기준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특히, 교사의 기준면적(참고자료 “규정 별표1” 참조), 체육장¹⁾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학생수별로 그 기준을 달리하고 있고,

교사, 체육장, 각종학교 등의 시설기준에 대해서 교육감이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²⁾.

1) 초중고등학교 기준으로 학생수가 ①600명 이하 ②601명에서 1,800명 이하 ③1,801명 이상으로 기준을 달리하고 있음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교사) ③ 각급학교의 교사 기준면적(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기준면적(유치원 교사 중 교실 총면적 기준은 제외한다)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이 각급학교의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5조(체육장) ③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을 두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

1. 새로이 설립되는 각급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
2.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제12조(각종학교 등의 시설기준) 시·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

현행 규정(시행령)에서도 학교 설립기준에 대해서 학생수를 고려하면서 일정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설립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³⁾.

참고로,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법안소위원회 의결) 중인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의 경우 교육감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형캠퍼스의 설립기준(교사 및 체육장 등)을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⁴⁾.

문 의 처
02)6788-5185

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에 대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

3) 교육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 현행 예외규정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형캠퍼스”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와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지역의 통학환경과 학령인구 분포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립학교의 분교(본교와 분리된 학교시설에서 본교의 장이 시행하는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본교에서 행하는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말한다.

제5조(도시형캠퍼스의 설립) ② 교육감은 지역 여건과 학생배치계획을 고려하여 도시형캠퍼스 설립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및 체육장 시설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의 기준면적”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별표 1]

교사의 기준면적(제3조제3항관련)

(단위 : m²)

학 교		학생수별 기준면적		
유 치 원		40명 이하	41명 이상	
		5N	80+3N	
		교사 중 교실 총면적 2.2N		
초등학교·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240명이하	241명이상 960명이하	961명이상
		7N	720+4N	1,680+3N
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120명이하	121명이상 720명이하	721명이상
		14N	1,080+5N	1,800+4N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계 열 별	120명이하	121명이상 720명이하	721명이상
	인 문 계 열	14N	960+6N	1,680+5N
	전 문 계 열		720+8N	2,160+6N
	예·체능계열		480+10N	1,920+8N

비 고

1. N은 각급학교의 전학년의 학생정원을 말한다.
2. 위 표의 고등학교 계열구분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동일고등학교에 2이상의 계열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열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학교 및 동일구내에 2이상의 각급학교가 위치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 급별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적용한다.
4. 주간수업과 야간수업을 겸하여 행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그중 인가학생정원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5. 수준별 교육과정의 심화·보충 학습에 필요한 시설의 기준면적은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